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안사유

○「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단순히 상위법을 재 기재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조례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제9조를 삭제하고,「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안 제8조1항, 제8조제7항)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8조제6항)

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취소' 절차 및 사유 규정 신설(안 제11조, 제12조)

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 관련 조례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 까지를 삭제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준용으로 법에 없는 제출서류인 상생협력계획서 제출부담을 없애고, 조례 제13조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내용과 제14조의 조건 등의 부과 내용을 통합하여 규정(안 제13조)

마.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조례 제13조의 2 규정을 삭제하고,「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를 준용(안 제13조의2제1항)

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세부절차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협의회 요청 등

사.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및 용어정비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2015. 5. 13

○ 개정안 중 제8조 1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때 성별 비율을 한쪽 성이 60%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권고 받았으나 사실상 당연직이 4명으로 위촉의 폭이 제한되어 미반영

3) 입법예고 : 의견없음 (2015. 5. 28 ~ 6. 20)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의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따라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11조, 제12조에서 유통상업보존구역 '취소' 절차 및 사유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 안 제13조의2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영업 제한시간 「오전 0 ~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 2, 17일」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를 준용(오전 0 ~ 오전 10시 범위내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은 공휴일 중에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 관계자와 합의하여 변경 가능) 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대규모 점포의 영업규제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